

평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2. 21 .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 나. 회부일자 : 1998. 12 . 29 .
- 다. 상정일자 : 1998. 12. 29. 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 제호를 평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계제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계제를 폐지하며 전문위원회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 가. 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의 목적
- 나. 사무과의 설치규정
- 다. 사무과장을 두도록 하고 임무를 규정
- 라. 전문위원을 두고 역할을 규정
- 마. 사무직원의 정원은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함
- 바.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평창군규칙으로 정함.

4. 검 토 의 견

- 가. 조직개편에 따라 '98. 9. 16일 제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개정되었으나, 전문위원을 조례에 명확히 하는등 강원도의 표준안에 따라 다시 재정비코자 하는 것임.
- 나. 기타 관련법, 자구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